

## 약관공시사항

### □ 기본사항

개정일	시행일	판매종료여부(종료일)	기존고객적용여부
2024-04-29	2024-06-01	판매중	적용

### □ 신구조문대비표

약관명	해당약관 조항	
	수정 전	수정 후
근질권설정계약서	<p><b>제3조 위험부담·면책조항</b></p> <p>①설정자는 은행에 인도한 담보증서(통장)가 불가항력·사변·재해 등 채권자의 <u>책임없는</u>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·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(통장)를 제출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담보증서(통장)·담보물수령증(통장) 등의 증서상의 인영·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·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등과 인감·서명에 관하여 위조·변조·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<u>이로 말미암아</u>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,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.</p> <p>③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, 설정자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·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,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, 이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<u>모두</u> 설정자가 부담합니다.</p>	<p><b>제3조 위험부담·면책조항</b></p> <p>①설정자는 은행에 인도한 담보증서(통장)가 불가항력·사변·재해 등 채권자의 <u>고의나 과실이 아닌</u>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·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(통장)를 제출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담보증서(통장)·담보물수령증(통장) 등의 증서상의 인영·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·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등과 인감·서명에 관하여 위조·변조·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<u>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</u>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,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.</p> <p>③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, 설정자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·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,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, 이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<u>(삭제)</u> 설정자가 부담합니다.</p>